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 
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윤상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25.

발의자 : 윤상직 · 정갑윤 · 곽상도  
이군현 · 강길부 · 최교일  
최도자 · 노회찬 · 주승용  
정성호 · 이춘석 · 권성동  
유성엽 · 이상민 · 오신환  
김관영 · 윤영석 · 박범계  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원전의 사이버테러 위협, 노후화 문제, 원전 산업체의 각종비리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·개발·생산·이용의 종사자 및 원자력시설 건설사업자, 원자력시설 운영사업자, 방사선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원자력관계사업자들의 은폐성과 방사선의 휘발성 때문에 증거수집 및 현장조사 등이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응이 어려움.

특히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특수한 업무분야를 원자력 및 방사선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범죄발생 장소가 일반사경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곳으로 효율적 수사가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선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중요함.

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 신설).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 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0.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·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

제6조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7.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

- 가. 「원자력안전법」
- 나.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
- 다.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<p>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</p> <p>1. ~ 46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~ 46. (현행과 같음)</p> <p>47.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. 「원자력안전법」 나.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다.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</p>
--	--